

건설재해예방 제도개선 세미나

- 본 고는 노동부 주최로 지난 3월 열렸던 『건설재해예방 제도개선 세미나』의 주제 발표내용임
<제 1 주제>
-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- 유일열 한국산업안전공단 수원지도원
-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활용방안 - 홍종민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전문위원
- <제 2 주제>
-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제도 - 박오현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천지도원

□ 제 1 주제 □

유 일 열
한국산업안전공단 수원지도원

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

1. 서언

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할 목적으로 그 계상 및 사용기준을

- 고시 제88-13호(1988. 2. 15)로 제정
- 고시 제89-4호(1989. 2. 10)로 개정
-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30조, 시행규칙 제32조의 법적근거 확립(1990. 1)
- 고시 91-57호(1991. 9)로 개정고시 되어 오면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조직 구성,

교육, 안전시설 및 장치 설치 등 실질적인 재해 예방 및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, 아직 적정계상과 집행에 미흡한 점이 많고, 일부 발주 기관 및 건설업체의 이해 부족으로 개선할 점이

많은 바, 건설현장에서 지도 및 점검 사업을 수행하면서 체험하고 있는 그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.

2.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문제점과 개선방안

항 목	실 태 및 문 제 점	개 선 방 안	비 고
1.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의 미흡	<p>(계 상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자, 현장소장 등의 이해가 부족 (공무가 안전관리비 계상) ○ 일부 관 발주처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계상액 부족 ○ '92 신도시 점검현장 49개소중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에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현장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정계상 : 19개소(39%) - 실행예산편성 : 35개소(71%) - 사용계획수립 : 40개소(82%) - 집행내역서작성 : 29개소(59%) ○ 총액 입찰제에 따른 낙찰·계약후 내역서 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기준보다 낮게 계상 ○ 자체공사(민간발주)의 경우 계약체결시 공사도급계약 내역서에 안전관리비를 계상 명기하여야 하나 산재보험료만 명시하고 안전관리비 누락 ○ 법정비용인 기본은 계상이 잘 되는 편이나 별도계상 비용은 그 근거가 불충분하여 계상이 안되고 있음. <p><집 행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용계획 및 집행내역서 작성, 관리상태 미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해·위험 방지계획서 심사 대상이 아닌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비에 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정계상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자료의 개발보급과 충분한 교육, 지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준양식 개발 보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계상내역서 · 사용계획서 · 집행내역서 ○ 부처간 업무협조로 제도 정착 ○ 공단의 적정사용에 따른 기술지도와 병행하여 노동부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 강화 ○ 발주자가 업자의 내역서를 검토하여 안전관리비는 총액입찰 금액과는 별도로 계상토록 하는 기준제정 ○ 안전관리비도 공사 도급 계약 내역서에 포함토록 제도장치 마련 ○ 안전시설 등 별도계상 항목에 대하여는 품셈화하여 처리하거나 현행기준에 의할 경우 기본비용의 30%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정하여 반영 ○ 공사특성 및 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의 GUIDE LINE 설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용계획 수립 및 내역서 작성등에 관한 표준양식 개발, 교육 및 지도 	<p>※ 덧붙임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현황 참조</p>

항 목	실 태 및 문 제 점	개 선 방 안	비 고
2. 계상기준 표 상의 공사분 류	<p>한 계상 및 집행이 특히 미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용내역서상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 사용비율의 40% 기준초과 - 하도급 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지급한 경우 대부분 공사비의 일부로 간주 하고 실제 안전측면의 사용미흡. <p>○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상의 건설업의 종 류에 따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건설 공사 - 철도·궤도 신설공사 - 일반 건설공사 <p>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로 토목공사의 경우 일반건설 공사와 중건설 공사가 모두 포함된 공사의 경우 일반건설 공사로 적용된 사례가 많음</p> <p>예) 도로공사중 일부 구간이 터널(공사 내 4,000만원 이상)인 경우</p>	<p>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대한 적정사 용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실시하고 서면으로 정리 보존 <p>○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상 위험성이 많은 중건설 공사가 해당되면 일반건설 공사 보다 효율이 높은 중건설 공사 효율 적 용</p> <p>○ 각 공사 특성에 따른 최소한의 항목 기준제시(건축공사, 터널공사, 교량공사 등)</p>	

3. 결 언

안전관리비는 그 계상 및 집행에 있어 개선할 점이 많이 있기는 하나 법적 제도가 마련된 만큼, 건설업체 및 발주자의 이에 대한 의식개선과 더불어 노동부, 공단의 제도정착에 따른 문제점 개선으로 건설재해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 안전관리비 효율체계 정비, 품셈화, 정산제도 도입 등 여러 현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동부 및 공단의 개선 노력이 크게 요구됨.

『덧붙임 1』

안전관리자 설문조사 결과

1. 현장의 표준안전관리비 실행편성 및 집행 상태(59명 응답)

가.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많은 금액을 계상·집행(11명→18.6%)

나. 법정안전관리비와 같은 금액을 계상·집행

(28명→47.5%)

다.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적게 계상·집행(16명→27.1%)

라.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잘 모름(4명→ 6.8%)

2. 안전관리비의 실행편성 및 집행에 있어 제일 큰 애로점

가. 계상이 적정하지 못함

나. 안전관리자의 권한 미약

다. 타 공정과 중복(가설공사, 재고사용 반영)

라. 항목별 상한 규제 %가 맞지 않음

마. 예산부족

바. 타 목적지원

사. 실행 미 지출

아. 실행작성자의 안전관리비 인식 부족

자. 구체적인 작성 ITEM 제시 및 사용예가 없고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음

차.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 집행에 대한 연구 필요

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현황

(금액: 천원)

현 장 명	공사분류	공사금액 (백만원)	대상금액 (백만원)	법정비용 (천 원)	계상금액 (천 원)	실행금액 (천 원)	집행금액 (천 원)	공 정 률 (%)	집 행 률 (%)	주 사 일
A	일반건설	17,570,000	12,299,000	231,221	212,049	212,049	45,009	17	19	'93. 2. 10
B	일반건설	39,088,000	27,361,600	514,398	-	630,000	308,542	91	59	'93. 1. 12
C	일반건설	12,280,000	8,596,000	161,604	42,911	194,000	74,152	40	45	'93. 2. 10
D	일반건설	27,640,000	19,348,000	363,742	446,424	476,140	335,951	57	92	'93. 2. 8
E	일반건설	7,062,000	4,943,400	92,935	107,924	107,390	24,950	15	26	'93. 2. 9
F	일반건설	127,789,050	89,452,335	1,681,703	-	1,033,619	491,975	42	29	'93. 2. 5
G	일반건설	29,000,000	20,300,000	381,640	-	435,920	205,547	50	53	'93. 2. 4
H	일반건설	85,000,000	59,500,000	1,118,600	-	1,209,348	169,028	15	15	'93. 2. 1
I	일반건설	16,850,000	11,795,000	221,746	261,478	298,085	98,686	40	44	'93. 2. 26
J	일반건설	105,913,233	74,139,263	1,393,818	-	1,019,738	889,541	95	63	'93. 2. 25

(일반건설)

(금액: 천원)

현 장 명	공사분류	공사금액 (백만원)	대상금액 (백만원)	법정비용 (천 원)	계상금액 (천 원)	실행금액 (천 원)	집행금액 (천 원)	공 정 율 (%)	진 행 율 (%)	조 사 율
A	일반건설	17,200,000	12,040,000	226,352	-	273,000	156,000	53	69	'93. 2. 10
B	일반건설	4,125,000	2,887,500	54,285	32,208	31,843	28,000	80	51	'93. 2. 4
C	일반건설	29,358,222	20,550,755	386,354	434,506	491,987	67,197	30	17	'93. 2. 3
D	중 건 설	40,883,000	28,618,100	744,070	736,000	742,000	246,000	43	33	'93. 2. 5
E	중 건 설	33,189,090	23,232,363	525,051	411,304	406,576	69,959	25	13	'93. 2. 2
F	일반건설	20,000,000	14,000,000	263,200	-	234,890	56,373	21	21	'93. 1. 4
G	일반건설	2,315,520	1,620,864	30,472	-	43,558	30,000	70	98	'93. 1. 29
H	일반건설	27,000,000	18,900,000	355,320	299,000	299,000	173,000	62	48	'93. 2. 23
I	일반건설	40,000,000	28,000,000	526,400	-	349,692	20,464	30	3	'93. 2. 22
J	일반건설	9,270,000	6,489,000	121,993	135,600	135,600	79,880	40	65	'93. 2. 23
K	일반건설	36,700,000	25,690,000	482,972	-	546,203	139,925	25	28	'93. 2. 15
L	일반건설	10,363,636	7,254,545	136,385	103,335	212,590	224,762	80	164	'93. 2. 15
M	일반건설	2,000,000	1,400,000	26,320	27,835	27,835	6,360	10	24	'93. 2. 15
N	일반건설	15,340,000	10,738,000	201,874	219,417	219,417	293,000	87	133.5	'93. 2. 12